

## 별첨 2. HPV 백신 공급 협약서

###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백신 공급 협약서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백신 중 [□ 가다실, 또는 □ 서바릭스]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.

**제2조(공급방법)** “갑”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“을”에게 위의 백신공급을 요청하고, “을”은 “갑”이 요청한 백신을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·납품 한다.

**제3조(보관 및 수송)** “을”은 백신의 보관 및 수송시에는 「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·판매관리규칙」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.

**제4조(백신비 지급)** “갑”이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에 비용상환을 요청하고,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결정된 건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(정부 조달계약에 의해 결정)로 지급을 하며, “을”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상환 받는다.

※ 보건소의 지급심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백신비를 직접 지급한다.

-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(중복접종, 이른접종 등)
-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한 경우
- “갑”이 공급 요청하고 “을”이 납품을 완료한 백신 중 유효기간이 도래시까지 접종하지 못한 백신

**제5조(백신공급기관 변경)** “갑”이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“을”에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하며, 백신공급기관이 변경 승인된 시점에 “을”이 공급한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를 지급한다.

**제6조(기타)** 동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2조(운영세칙)에 따른다.

20 년 월 일

“갑”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	“을” 백신공급기관
주 소 :	주 소 :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사동길 2
연 락 처 :	연 락 처 : 02 - 740 - 4203
의료기관명 :	회 사 명 :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
의료기관코드 :	사업자번호 : 301 - 85 - 10198
대 표 자 :	대 표 자 : 김 기 철
(인)	